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5. 20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5. 12. 이민석 의원 외 9명

나. 회부일자: 2020. 5. 13.

다. 상정일자: 제23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0. 5. 20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김진천 의원

가. 제안이유

청소년관련 정책수립과 주요사업 추진 시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·캠페인 등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위원회를 구성, 운영하여 청소년의 잠재역량개발 및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2)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·기능 및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(안 제3조~제4조)
- 3) 청소년참여위원회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4)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위촉·해촉 및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
(안 제6조~제8조)

5)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, 의견수렴, 수당 및 위원 표창에 관한 사항
(안 제9조~제12조)

6)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
(안 제13조~제14조)

3. 검토보고 (최종익 전문위원)

가. 제안경위

- 동 제정조례안은 이민석 의원 외 9인으로부터 2020.5.12. 제출되어, 의안번호 제42호로 2020.5.13.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- 제정취지는 청소년들의 제안이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음.

나. 주요 검토의견

(1) 조례제정 필요성 검토

- 국회에서 1991.12.31.자로 제정된 「청소년 기본법」을 근간으로 마포구 청소년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며, 이후 2013년 5월부터는 마포구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립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 위탁 운영되었으나,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의2¹⁾의 일부조문이 2017.12.12.

-
- 1) **제5조의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**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·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**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·협의·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·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** <개정 2017. 12. 12.>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

자로 개정·신설되어 단순히 의견수렴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토록 강화하게 되었음.

-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경기도 등 42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, 서울시에서도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, 용산구 등 10개구²⁾에서 조례 제정이 된 바 있음(2020.5.기준).
- 따라서 청소년들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청소년의 잠재역량개발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육성을 도모하는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적절하다 하겠음.

(2) 조례조문 주요내용 검토

- 본 제정조례안은 14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명시와 용어를 정의하였으며, 안 제3조와 제4조의 경우 마포구청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과 위원 수는 10명이상 30명 이내로 하는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,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의무를,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의 위·해촉 및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,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, 의견수렴, 수당 및 위원 표창에 관한 사항, 안 제13조의 경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2. 12.>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2. 12.>

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7. 12. 12.>

[전문개정 2014. 3. 24.]

2) 강동구, 관악구, 광진구, 금천구, 도봉구, 서대문구, 서초구, 성동구, 송파구, 용산구(이상 10개구)

- 주요조문 검토사항으로는 안 제2조의 청소년의 연령에 관한 정의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근거하였으며, 안 제3조와 제4조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수행과 운영에 있어서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랐으며, 안 제5조의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8조에 근거하였음. 또한, 안 제6조로부터 안 제12조의 경우로 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과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표준 조례(안)과 ‘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’ 지침에 따랐으며, 안 제13조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에 관한 사항 또한, 지침에 따르는 등 상위법령 등에 부합하다 생각됨.

(3) 종합의견

- 이상의 제정 조례안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³⁾의 규정과 여성가족부의 ‘2020 청소년사업 안내’ 지침 등에 근거한 바, 전체적 조례 체계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3) **제2조의2(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**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(이하 "참여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은 성별·연령·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며,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.

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,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·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8.6.5.]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